

준비 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대법원 판결(1977. 9. 28. 선고 77다300)관련, 대법원장께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고소장에(증거자료1)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공개질의 내용을 변조함으로써, 77다300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77다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은 유효하다는 것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의 “재임용 탈락은 학교자유재량행위, 교수지위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들이 위법임을 대법원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교수지위확인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는 곧 교수지위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위 원고 김명호



증거자료

1. 2006년 7월 19일 제출된, 고소장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